

2) 앞으로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율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등의 외화부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의 산정방법 정비(제21조의4)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을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6342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4 중 2709.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1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1	1억8천5백만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1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1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1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1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1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1	
	자. 기타		1	
	2. 역청유(瀝靑油)		1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관세율표번호 2709.00란의 한계수량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한계수량인 1억7천만배럴의 범위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5]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2 2 2	1천5백만 배럴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	
2711	1	액화한 것		2	
2711	12	프로판		2	수입전량
2711	13	부탄		2	수입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2	수입전량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1.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 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0	수입전량
		3. 유기발광다이오드단자(오엘이 디) 제조용 증착기			
		가. 물리적 방식의 것		0	수입전량
		나. 화학적 방식의 것		0	수입전량
		4. 기타	다음 각 호의 것		
			1. 건식 식각기	0	수입전량
			2. 증착기		
			가. 물리적 방식의 것	0	수입전량
			나. 화학적 방식의 것	0	수입전량
			3. 이온 주입기	0	수입전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5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5개 품목 중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및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건식 식각기, 증착기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하반기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계수량을 기존의 1억7천만배럴에서 1억8천5백만배럴로 증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634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